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6-30호

2026년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2026년도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김 월 용

1. 신청 개요

○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실시**

○ **(신청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제19조, 제24조, 제44조 등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신청 및 교부 절차

<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교부 절차 >

신청자	양성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자격증 발급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및 자격발급사정 →	자격증 제작 및 교부
양성기관 접수일정 내 서류 제출 완료	신청서류 • 신청자격 확인	• 접수 차시 기준 양성기관 정보 현행화 • 신청자별 자격신청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파일 첨부	· 신청서류 검토 · 자격요건 검토	· 자격증 제작 · 자격증 교부 (양성기관으로 발송)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양성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신청자 개별 신청은 불가함.

3.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6. 10. 19.(월) ~ 10. 27.(화) 17:00 까지

- 개인 신청자는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

구분	접수 기간		자격증 교부
	신청자 → 양성기관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4차	양성기관 자체 공지	10. 19.(월) ~ 10. 27.(화) 17:00 까지	12. 4.(금)

- **양성기관별 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관련 사항은 각 양성기관의 자체 공지를 통해 확인
- **양성기관은 차시별 접수 마감일까지 자격발급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
- 대학(원) **졸업예정** 및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는 **제1차·제3차 접수 기간**에만 신청 가능

※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7년 제1차 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2026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접수 주요 변경사항

○ (신청업무 프로세서 개선)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 양성기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별 자격신청 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파일 첨부

※ 2026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부터 전자공문 및 신청서류, 신청자 명단 우편발송 절차 생략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양성기관 계정 로그인 후 자격증 발급 온라인 신청 실시

- ① 양성기관 정보 및 담당자 정보 현행화(접수 차시 기준)
- ② 개인 신청자별 자격증 발급 신청 정보 입력
- ③ 개인 신청자별 신청서류 PDF 파일 첨부

※ 「(붙임) 온라인 시스템 매뉴얼 - 1. 평생교육사 자격증 온라인 신청」 안내 참조

□ 신청서류

<table>
<tr><th>구분</th><th>신청서류</th></tr>
<tr><td rowspan="3">공통 서류</td><td>•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td></tr>
<tr><td>•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인정)</td></tr>
<tr><td>
<table>
<tr><th>구분</th><th>대학(원)</th><th>학점은행제</th></tr>
<tr><td>졸업자 및 학위수여자</td><td>- 졸업증명서 1부</td><td>- 학위증명서 제출 면제</td></tr>
<tr><td>졸업예정자 및 학위수여 예정자</td><td>- 졸업예정증명서 1부 (2급 1호 대상자 필수 제출)
- 졸업 대학과 자격발급 신청대학(양성기관)이 동일한 경우 졸업 예정증명서 제출 면제
(홈페이지 최종학력란에 졸업예정 및 졸업예정일 입력)</td><td>-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1부</td></tr>
</table>
</td></tr>
</table>

	• **성적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과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등록 완료자는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제출 면제**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 이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반드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함.
	• **기본증명서(일반)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개명 사실 확인 필요 시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유형) 제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확인하여야 함.
해당 자별 추가 구비 서류	• **유사과목 심의 신청자**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강의계획서 각 1부
	• **(구)평생교육법 적용 대상자 중 현장실습 면제자** -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경력(재직)증명서, 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 각 1부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및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1부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5. 유의사항

○ 신청서류 미비, 누락 등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발급이 불가함.**

○ 대학의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은 **2008년 2월 18일 이후 운영된 과목에 한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으로 인정 가능함.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과목을 이수한 경우, **11월 13일(금)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양성기관은 자격발급 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함.

6. 향후 일정

○ **(접수 마감)** ~ '26. 10. 27.(화) 17:00 까지

○ **(자격 검정)** '26. 10월 ~ 11월 중

○ **(자격 교부)** '26. 12. 4.(금)

○ **(교부불가자 후속 조치)** 교부불가 대상자의 신청서류는 자격증 교부일로부터 한달 간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양성기관 계정 로그인 후 나의 자격증 신청현황의 교부불가자 세부 신청내역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7. 관련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평생교육사자격·학습이력실 (☏ 1577-3867, 평일 13~17시 운영)

붙임	자격발급 주요 변경사항 안내

구분	현행	변경 후
접수 시간	접수마감일 24:00 까지 접수 가능	[2026년 제4차부터 적용] 접수마감일 17:00 까지 접수 가능
신청 서류 제출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류 우편 발송	[2026년 제4차부터 적용] 온라인 접수 시 신청서류 파일 첨부 (신청서류 우편 발송 생략)
미비 서류	[2026년까지 적용] **자격검정 기간 내 신청서류 보완 완료 시,** 해당 차시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가능	[2027년부터 적용] 접수마감일까지 온라인신청에 첨부된 신청서류로만 자격검정이 실시되며, 접수마감일 이후 별도의 서류 보완이 불가함. 신청(증빙)서류 미제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재 등으로 자격 요건 확인이 불가한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발급이 불가함**. 안내 사항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으로 간주함.
학점 은행제 학점 미인정	[2026년까지 적용]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안내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027년부터 적용]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자격증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